

금융위원회 직원 교육자료  
(2016. 1. 8)



---

# 금융규제 운영규정 교육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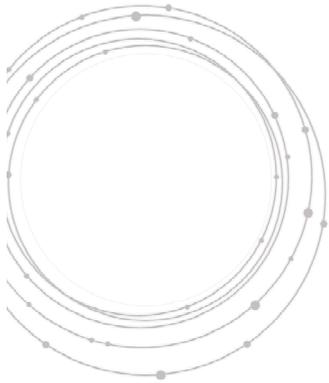
---

2016. 1. 8.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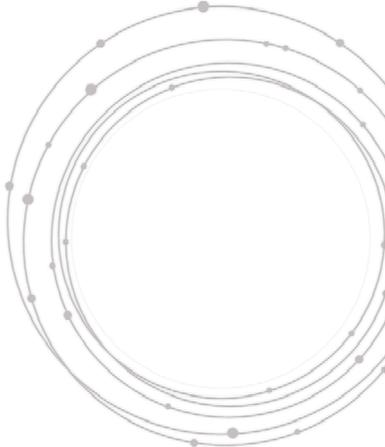


# 목 차

■ 금융규제 운영규정 교육자료

■ 금융규제 운영규정 조문 설명자료 ..... 1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전문 ..... 27





금융규제 운영규정 교육자료

# 금융규제 운영규정 교육자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금융규제 운영규정」

— 금융규제 및 감독행정작용 등 운영에 대한 원칙과 절차 —

2016. 1. 8



금융위원회

## 목 차

---

I. 추진 배경

II. 제정 내용

III. 향후 과제

IV. 참고 자료

# I. 추진 배경

---

1. 금융개혁에 있어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의미
2.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경과 및 의의

# 1. 금융개혁에 있어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의미

-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현시킴으로서 국민의 편익 제고

➔ “**코치→심판**”으로 **감독·검사 방식 개선, 법령규제 및 그림자규제 개혁 추진**

법령규제개혁('15.6.15)	그림자규제개혁('15.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금융규제를 전수조사(1,064건)하여 <b>합리화 기준</b>에 따라 정비하여 211건 개선</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넓고 비합리적인 금융행정지도 일괄 정비</b> * ('14) 700여건 → ('15) 50건</li><li>✓ <b>문서주의</b> 원칙에 따른 구두지시 금지, 금융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하는 <b>불이익조치 금지, 절차의 투명성 확보</b> 등 그림자규제 운영 원칙과 절차 마련</li></ul>

**합리화  
기준**

- ①사후규제 ②네거티브 ③온라인 규제
- ④동일기능·동일규제 ⑤국제정합성
- ⑥위험관리수준에 따른 규제 차등화
- ⑦일시적 강화 규제 합리화

금융규제개혁 과정에서 정립된 내용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으로 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금융위, 금감원 등이 **감독·규제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를 제도화·상시화**

#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 측면에서도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핵심

##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15.7.2)

Q 1 : 금융개혁과제 중 가장 기대하는 과제는?

금융 규제개혁	가격결정 자율성 제고	해외진출 활성화	거래소 개편	금융교육 강화	계
46.4	32.7	9.1	7.3	4.5	100%

▶ 법령규제 및 그림자규제 개혁을 기대하는 응답이 **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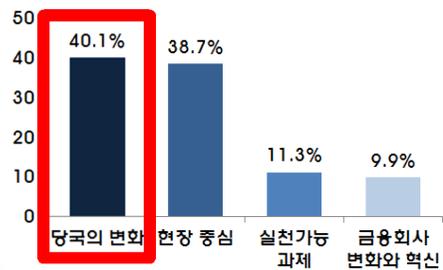
Q 2 : 그림자규제가 근절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8.3	26	43.8	13.5	8.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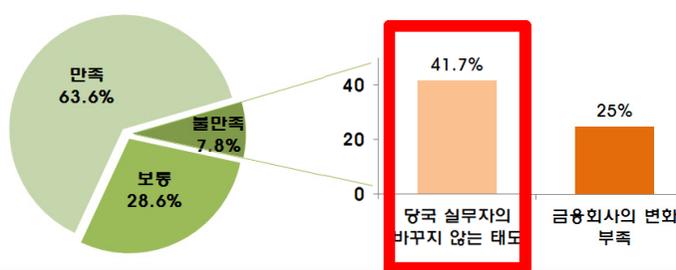
▶ 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되었다는 응답은 **21.8%**에 불과

## 2015 금융정책 대국민 서베이('15.12)

Q 1 : 금융개혁에 **만족**하는 이유



Q 2 : 금융개혁에 **불만족**하는 이유



▶ 금융개혁 만족 이유, 불만족 이유 모두 **당국 실무자의 태도에 달려 있음**

➔ **금융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규제 행태 변화가 열쇠**

## 2.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경과 및 의의

약 2개월 동안 **제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구성(2015, 10월)
  - ✓ 민간 위원장(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을 포함하여 **민간위원 8人** 위촉
  - ✓ 제정위원회 산하에 **실무 TF 구축**(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법률전문가로 구성)
- **제정위원회 회의** 총 3회(10.23, 11.11, 12.2) 및 금융업권 주최 **공청회**(11.26) 개최
- **금융개혁회의**(12.23) → 법제처 검토(12.28) → **국무총리 재가**(12.30) → **발령**(1.4)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금융감독기관**부터 **변화하겠다는 약속**

- ✓ 개별 부처의 소관 규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운영 규범을 마련한 **첫 사례**
- ✓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함으로써 **구속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제고

### 훈령의 목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제정이유

그간 정부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 책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규제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경제위기·금융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해 **금융규제 개선 노력이 주춤한 시기**에는  
그 **개선 이전의 규제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고,

**금융규제를 개선함에 있어서도** 금융규제를 받는 금융회사 등의 관점보다는  
금융규제의 운영주체의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은 경영건전성 유지 등을 명분으로  
**비공식 행정지도, 구두지시 등을 하는 관행**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도 이러한 관행에 길들여져  
**자율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이에 정부의 **금융규제개혁을 체계화·상시화**하고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 훈령을 제정함

## Ⅱ. 주요 내용

---

1. 훈령 체계
2. 훈령 적용대상
3. 명시적 규제 원칙과 절차
4. 금융행정지도 · 감독행정작용 원칙과 절차
5. 훈령 이행력 확보수단

※ 참고 : 실무자 일하는 방식의 변화

# 1. 훈령 체계

##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5개 장(章), 24개 조문으로 구성

### 총칙

- 목적(§ 1), 정의(§ 2), 적용범위(§ 3)
  - ✓ **금융규제,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등을 정의
  - ✓ 이 훈령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을 제한적으로 규정

### 명시적 규제

-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4),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 6) 등
  - ✓ 금융규제 신설·강화 시 **반드시 사전검토 해야 하는 원칙** 제시
  - ※ 명시적 규제의 원칙과 절차는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준수 권고사항으로 규정(§ 24)

### 행정지도 / 감독행정

- 행정지도·감독행정의 원칙(§ 7), 절차(§ 8~13), 사후관리(§ 14) 등
  - ✓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행정지도의 내용적·절차적 요건** 제시
  - ✓ 감독행정작용도 행정지도와 동일하게 통제(단, 의견청취, 사전보고 등 일부 생략)

### 상시 개선체계

- 규제개선 사후점검(§ 17), 옴부즈만(§ 18), 외부 실태평가(§ 20) 등
  - ✓ 이 훈령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
  - ※ 특히 규제개선 사후점검, 옴부즈만, 외부 실태평가는 활동결과를 **매년 외부 공개**

## 2. 훈령 적용대상(§ 2)

### 금융회사등

● 금융규제로 인해 **자율성의 제약을 받는 민간 법인·단체** 등을 총칭

✓ 금융위·금감원 검사대상 기관, 기타 금융 관련 법령 적용을 받는 자 등

- ▶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저축은행 등(국내 영업 외국회사 포함)
- ▶ 거래소 상장사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적용 받는 회사
- ▶ 금융권 협회 등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비영리법인
- ▶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도 행정집행이 아닌 영리활동 측면에서는 적용
- ▶ 기타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

### 금융유관기관

● **훈령 준수주체로 금융규제 집행·감독·검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등의 영업을 사실상 제약하는 기관**을 총칭

✓ 금감원, 금융공공기관,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금융권 협회 등

- ▶ 금융공공기관 :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캠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은 해당없음)
- ▶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한국은행
- ▶ 금융권 협회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해 감독, 검사, 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

## 금융규제

- 금융위 소관 법률(40개), 행정지도, 기타 금융회사등의 영업을 제약하는 금감원 규칙, 금융유관기관 지침 등을 총칭
  - ✓ 금융위 소관 법령, 금감원 규칙은 명시적 규제, 기타 규제는 비명시적 규제

## 금융행정지도

- 금융회사등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행위
  - ※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규제적 지도, 정보제공, 분쟁조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훈령 적용대상**인 금융행정지도는 **규제적 지도에 국한**

## 감독행정작용

- 금융회사등이 법령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 또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감독행위
  - ※ 감독행정작용은 금융행정지도와 달리 금융규제가 아님

## 적용 시 참고사항

### ▶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작용을 구별하여 정의한 이유는,

- 입법기술상 한계, 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감독 필요성 등의 감독현실을 고려하여, 이러한 감독행위(예 : 리스크관리 등)는 행정지도와 구별하여 **절차를 간소화**

## 적용 시 참고사항

### ▶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작용 구별 포인트는 금융회사등에 “**새로운 부담**” 을 요구하는지 여부임

- 금융행정지도는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에 없는 새로운 부담을 요구하지만,
- 감독행정작용은 법령에 없는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지 않음

※ 구별이 애매할 경우에는 금융행정지도로 간주 필요 (권고)

### ▶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이 아닌 경우**(제2호제4호 각 목)

- ① 금융회사등의 요청에 따른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회신
- ② 금융감독기관에의 질의 또는 민원에 대한 답변
- ③ 인허가 또는 검사·제재결과 등 관계 법령 상 조치에 따른 통보
- ④ 금융 관련 분쟁 조정 등

### ▶ **금융감독기관이 업권 의사에 반하여 협회 등의 규정을 제·개정하는 행위는 자제(권고)**

- 업권 요청에 따라 또는 금융감독기관이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업계와 협의하는 것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관련 사례를 규정화하지는 않았으나,
- 업권 지원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관이 업권 의사에 반하여 협회 등 규정을 제·개정하는 행위는 자제

### 3. 명시적 규제의 원칙과 절차(§ 4~6)

#### ※ 금융유관기관에 준용 권고(§ 23)

#### 사전 검토사항 (원칙)

기 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규제기본법」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요 · 최소한으로 해야한다는 비례의 원칙, 규제법정주의, 규제 신설 · 강화 시 일몰설정 등</li> </ul> </li> </ul>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규제 합리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사후규제 ②네거티브 방식 도입</li> <li>③동일기능-동일규제 ④국제수준</li> <li>⑤위험관리 수준에 따른 차등화</li> </ul> </li> <li>※ 오프라인 규제, 금융사고 등에 따른 강화 규제 정비는 사후정비 기준에 해당</li> </ul>

####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규제기본법 」 절차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규제심사 논의결과 규개위 송부 → 규개위 심사</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규제심사위 논의결과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규제심사 논의결과 외부공개 → 규개위 송부 → 규개위 심사</li> </ul> </li> </ul>
---

#### 적용 시 참고사항

▶ 훈령 시행 후, 자체규제심사 시 검토해야 할 사항(제6조제3항 각 호)

- ① (기존) 규제영향분석 결과
- ② (추가) 금융규제 합리화 기준 검토결과
- ③ (추가)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등

## 4. 금융행정지도 · 감독행정작용 원칙과 절차 (§ 7~14)

### 원칙

- 비례의 원칙
- “행정지도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 내규, 지침 등에의 반영 요구 금지
- 행정지도 불이행 또는 이행에 대한 **직간접적 불이익조치 금지**
- 법령등 규정 외 인사, 금리, 수수료, 배당 등에 대한 **개입금지**  
※ 단, 극히 제한적인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허용** (인사는 불가)

### 적용 시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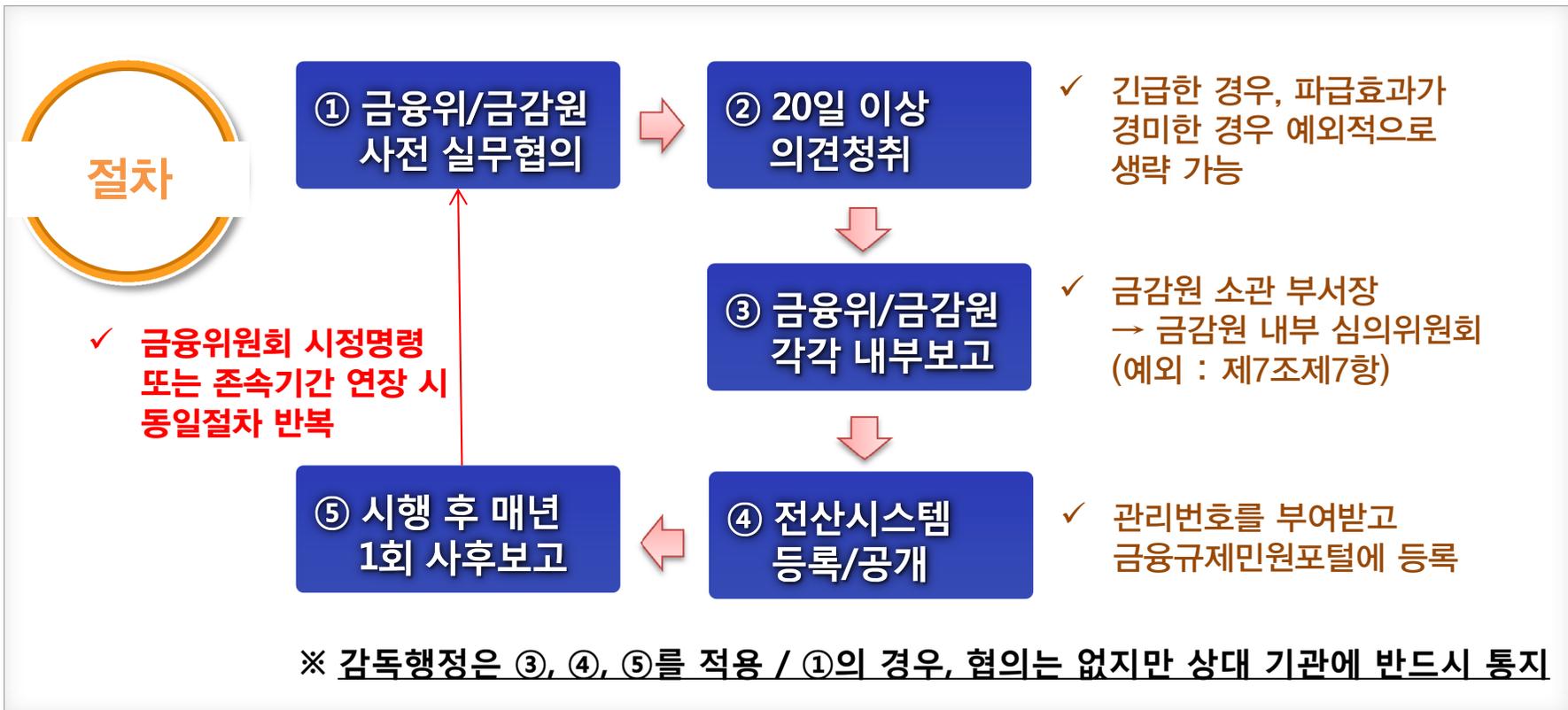
- ▶ 금융행정지도 · 감독행정작용을 금융회사등의 **내규, 지침, 금융권 협회 규정 등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공문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제7조제3항)
  - 이는 금융회사등이 스스로 금융행정지도를 내규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 ▶ 감독행정작용이 법령준수에 필요한 세부지침이라는 이유로 **감독행정작용 미이행에 대해 항상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제7조제4항)
  - 감독행정작용 미이행에 대해 제재하기 위해서는 감독행정작용 미이행과 법령위반 간 직접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필수 기재사항

- 금융행정지도인지, 감독행정작용인지 여부 및 관리번호
- 내용 및 목적
- 유효기간(감독행정작용은 해당없음)
- 부서장급(금융위: 과장급, 금감원: 국장급) 이상의 결재자가 시행
- 관련 법령등
- 행정지도 원칙 및 금리, 수수료, 배당 등에 개입할 경우 그 사유

## 적용 시 참고사항

- ▶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구두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지체없이 통보**(제8조제2, 3항)
  - 문서로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두지도 인정
- ▶ **제8조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금융행정지도 · 감독행정작용은 **효력이 없음**(제8조제4항)



### 적용 시 참고사항

- ▶ 종전에 비해 달라진 점은 “**금융위 사전보고**” 절차가 폐지되었으며, 금융행정지도 뿐만 아니라 **감독행정작용도 전산에 등록**(제12, 16조)
  - 단, 금리, 수수료, 배당 등에 대한 개입 관련 금융행정지도 시 금융위원회 의결 필요(제7조제7항)

## 유효기간

- 원칙 : 1년
- 구두지도 : 90일, 사후보고 : 6개월
- 법률공백 해소를 위한 행정지도 : 2년

## 적용 시 참고사항

### ▶ 금융행정지도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이유

- 규제를 법령보다 상대적으로 통제 강도가 낮은 금융행정지도로 존치하는 것을 방지
- 이에 따라 제13조제3항에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하기로 한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연장횟수를 1회로 제한(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는 제외)

### ▶ 제13조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횟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전 폐지하고, 유사한 금융행정지도를 신설하는 경우, 해당 지도는 효력이 없음(제13조제4항)

## 5. 훈령 이행력 확보수단 (§ 17~22)



금융규제 점검



금융규제의 주기적 정비 및 사후점검 [기획조정관] ※ 금융정책국 협조

- 자체규제심사위원회가 매년 금융규제 정비계획 수립
- 금융규제 개선 사후조치 점검 / 활동결과는 매년 대외 공개



옴부즈만



행정지도, 감독행정, 기타 불합리한 관행 개선 [현장지원단]

- 신고인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비밀준수의무,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 옴부즈만 개선권고에 대해 조치 / 활동결과는 매년 3월 대외 공개

### 적용 시 참고사항

- ▶ 옴부즈만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업권별 위원 5명으로 구성할 예정
- ▶ 옴부즈만 신고에 대한 **익명성 보장**을 위해 다양한 조치 강구
  - 7개 금융권 협회에 옴부즈만 신고센터 설치 예정(협회 명의로 신고 가능)
  - 훈령에 비밀준수의무(제18조제4항)를 규정



### 금융규제 애로사항 접수 · 처리 [현장지원단]

- 금융회사등에 방문하여 금융규제 집행실태 조사 등 실시



###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여부 점검 [기획조정관]

- **외부 전문가 규정 준수실태 평가** / 평가결과 매년 12월 공개



###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감사, 행정인사 등]

- 신입 직원교육, 포상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

### 적용 시 참고사항

- ▶ 외부기관 실태평가 결과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제20조제1항)

# 참고 : 실무자 일하는 방식의 변화 (→ 전문성 · 신뢰 · 소통 강화)

명시적 규제  
신설 · 강화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시 **합리화 기준 검토결과 추가 제출**

종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영향분석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영향분석서</li> <li>✓ <b>합리화 기준(제4조제2항 각 호) 검토결과</b></li> </ul>

금융행정지도  
/  
감독행정작용

- 금융행정지도 **금융위 사전보고 폐지** 및 **감독행정작용 등록 시행**
- 금리, 수수료, 배당** 등에 대한 개입금지(금융위 의결 시 가능)

종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 · 금감원 부서 금융행정지도</li> <li>✓ 금융위 사전보고</li> <li>✓ 감독행정작용 등록 X</li> <li>✓ 금리, 수수료, 배당 등에 대한 개입금지 원칙 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 사전보고 폐지 (금감원은 내부 심의위원회 보고)</li> <li>✓ 감독행정작용 등록 O</li> <li>✓ 금리, 수수료, 배당 등에 대한 개입금지 O</li> </ul>

감시 · 공개  
확대

- 옴부즈만, 외부기관 실태조사, 자체규제심사 등의 결과를 대외 공개
-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외부 감시채널이 많아지고, 평가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 규제에 대한 책임성** 증대

## Ⅲ. 향후 과제

---

1.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작용 간 구별 명확화
2. 금융위 ombudsman 제도 활성화

# 1.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작용 간 구별 명확화

## 과 제

-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작용을 구별하는 지표인 “**새로운 부담**”에 대한 기준이 판단주체마다 다를 수 있음
- 자의적인 판단이 일반화되면 상대적으로 절차 준수 부담이 낮은 감독행정작용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질 가능성

## 대응방향

- 금융회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감독 효율성을 제고하는 균형있는 판단기준에 대한 **금융감독기관 내·외부의 합의** 필요
- 감독행정 사례를 축적하여 금융감독기관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등 “**사례분석→공개→피드백**” 지속

## 2.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 과 제

- 옴부즈만 신고 내용은 대부분 개별적 · 구체적 사안에 해당하여 신고 시 **익명성 보장**이 곤란
- 금융권은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를 우려하여 옴부즈만 제도 이용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

### 대응방향

- 익명성 보장을 위한 비밀준수의무, 불이익조치 금지 등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옴부즈만에 접수된 문제가 해결된 **사례**를 **업권에 수시 공개**

## IV. 참고 자료

---

1.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논의내용
2. 외국의 비명시적 규제 사례
3. 금융행정지도 · 감독행정작용 사례

# 1.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논의내용

※ 제정위원회, 공청회 주요 의견

## 주요 의견

## 규정 반영내용

1. 자율규제 형식을 띤 그림자규제에 대한 통제

✓ 자율규제 개입금지 규정화(§ 7③)

2. 행정지도와 감독행정 간의 모호성 해소 필요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례 축적을 통해 구분기준 정립

3.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 개입금지 범위 명확화

✓ 개입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결정 (§ 7⑥)

4. 위기상황에 대한 규정 적용 유보는 엄격히 제한

✓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으로 한정(§ 3)

5. 집행력 담보를 위한 제재조항 마련

✓ 인사조치 등 상벌규정 마련(§ 22②)

6. 옴부즈만 제도 운영 시 익명성 보장 강화 필요

✓ 신고인 정보 및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규정(§ 18④)

7. 규제합리성 확보를 위해 자체규제심사위 실효성 제고

✓ 위원 과반수 외부전문가로 구성 및 논의결과 공개(§ 6,17)

8. 행정지도 존속기간 단축 필요

✓ 법률규정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존속기간 3년→2년 단축(§ 13②)

## 2. 외국의 비명시적 규제 사례

### 미국

- 법률에서 정부에 법령 외 규제\*를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법령해석규정, 정책성명, 안내문서(guidance documents) 등
- 법령 외 규제에 의견청취 절차는 없으나, **공표 의무는 있음**

### 영국

- 영업행위감독기구(FCA), 건전성감독기구(PRA)의 “지침\*” (Guidance) 제·개정 근거를 **금융통합법(FSA 2012)에 규정**  
\* 지침은 ①법령에 대한 설명, ②법령 외 정보나 자문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함
- 지침 제·개정 또는 폐지시 **재무부에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

### 일본

- 금융분야를 세분화하여 기준서 또는 해설서\*를 발행  
\* 증권회사의 이해상충관리 지침,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금융기관 정보시스템관리 외부위탁에 대한 감독지침 등
- 금융당국은 지침 불이행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나, 준수 실적을 제재 등 **행정처분의 경감사유(mitigating factor)**로 고려

### 3. 금융행정지도 · 감독행정작용 사례

#### 금융행정지도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법률공백 해소를 위해 제정
  - ✓ 금융회사 이사회 구성, 권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등 규정
-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유의사항**
  -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적용대상, 행사요건 등 세부 운영기준
  -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 홍보 촉구

#### 감독행정작용

- **리볼빙서비스 리스크 관리 강화**
  - ✓ 서비스 약정시 회원 자격심사 철저, 회원 신용도에 따라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이용 회원의 신용도 모니터링 강화 및 부실징후 회원에 대한 카드이용한도 관리 강화
  -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4조(위험관리규정)에 따라 서비스 관리 기준 제시
 

제14조(위험관리규정)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및 절차, 한도관리, 내부통제와 위험측정, 관리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 '15년 감사원은 **금융행정지도임에도 감독행정작용으로 처리한 사례를 지적**  
 예 ) 은행 임직원에게 대한 대출금리 우대 폐지 요구('15.1월)



금융규제 운영규정 교육자료

# 금융규제 운영규정 조문 설명자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2016. 1. 8.

금 용 위 원 회

I. 개요 .....	4
II. 총칙	
1. (제1조) 목적 .....	6
2. (제2조) 정의 .....	6
3. (제3조) 적용범위 .....	11
III.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및 절차	
4. (제4~6조)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의견청취 등 .....	11
IV. 금융행정지도의 원칙·방식 및 절차 등	
5. (제7조)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	14
6. (제8조) 금융행정지도의 방식 .....	16
7. (제9조~제11조) 금융행정지도 시행 전 절차 .....	16
8. (제12조) 금융행정지도 등록 및 공개 .....	18
9. (제13조) 유효기간 .....	20
10. (제14조) 사후관리 및 시정명령 .....	21
V. 감독행정작용의 원칙·방식 및 절차 등	
11. (제15~제16조) 감독행정작용 .....	22
VI. 금융규제의 상시개선 시스템체계 등의 마련	
12. (제17조) 자체규제심사위원회 .....	22
13. (제18조) ombudsman .....	23
14. (제19조) 금융현장점검반 .....	24
15. (제20조) 실태평가 .....	24
16. (제21조) 교육 .....	25
17. (제22조) 상벌 .....	25
18. (제23조)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준용 .....	25

# I. 개요

## 1 추진 배경

□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현시킴으로서 국민의 편의 제고

### ① '자율'에 기반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감독과 규제 개혁

- 코치, 과도한 검사·제재, 구두·비공식 지도(그림자규제) → 심판, 컨설팅 검사 방식, 문서·공식적 지도로
- 경쟁과 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 과감히 폐지·개선

### ② 새로운 제도 도입 등 '혁신'의 토대 마련

은행	▪ 인터넷전문은행(23년만의 은행업 인가), 계좌이동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은행산업 본격 경쟁 시작
자본	▪ 거래소 개편, 클라우드 펀딩 도입, 사모펀드 규제완화, ISA 도입 등 대출에서 투자로의 자본시장 혁신
보험	▪ 보험상품·자산운용 규제 전면개편,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등 22년만의 보험산업 개편
핀테크	▪ 핀테크 규제개선, 핀테크 인프라(테스트 베드, Open API)구축,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금융과 IT가 융합된 새로운 금융모델 창출

\* 금융개혁을 위한 10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 중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금융위·금감원이 규제와 감독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율

- ① 규정화를 위해 10월부터 법률·금융 전문가(8인)로 구성된 민간 제정위를 통해 조문별로 하나하나 심도있게 논의(3회 개최)
- ② 공청회(11.26일), 입법예고(12월)를 통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반영
- ③ 상급기관 명령인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하여 구속력 강화

⇒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제도화 하고자 하는 조치

## 2 주요 내용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개혁 과제로 법령규제개혁(6.15 발표) 및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혁(9.18 발표)을 추진

→ 개혁과정에서 정립된 내용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

① (법령규제개혁) 소관 규제를 전수조사(1,064건)하여 유형화\*한 후, "합리화 기준"에 따라 규제 하나하나를 검토 → 총 211건 개선

\* 4개 유형 : 건전성, 영업행위,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 영업행위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정교화

< 금융규제개혁 7개 합리화 기준 >

①사전규제→사후책임 강화, ②선진사례 벤치마킹, ③오프라인→온라인, ④포지티브→네거티브, ⑤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추어 경쟁촉진, ⑥금융사고로 강화된 규제정비, ⑦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

→ 규정화 : 규제 신설·강화시 7개 합리화 기준 검토를 의무화

② (그림자규제 개선) 입법기술상 한계, 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등으로 금융행정지도 및 감독행정작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가 필요

○ 낯고 비합리적인 금융행정지도를 일괄 정비하여 대폭 감축

\* ('14년말) 약 700여건 → ('15년) 현재 50건

○ 문서주의 원칙에 따른 구두지시 금지, 금융행정지도 미이행 이유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절차의 투명성 원칙과 절차 마련

→ 규정화 :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에 대한 원칙 및 금융위·금감원 내부통제 절차 등을 마련

③ (경영개입 금지) 특히 금리, 배당, 수수료, 인사 등 금융회사 내부 경영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입 금지**

④ (상시개선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신설·강화 규제, 금융행정지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 마련

① 금융위·금감원 내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 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

- 신설·강화 규제가 “합리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전심사
- 기존에 공표한 규제개선 과제 후속조치 상황 점검 등

② **옴부즈만, 외부기관 실태평가** 제도 도입

- 은행·보험 등 금융업권별 **옴부즈만**이 금융위·금감원의 훈령 준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

\* 옴부즈만 **활동결과**, 권고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조치는 **매년 12월** 공개

- **외부 전문가**를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위·금감원의 훈령 이행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매년 12월** 공개

③ 훈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벌·교육**을 규정화

- 훈령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 조치**하고, **신입 직원**에 대한 **정례 교육** 실시

※ **법제처 심사 완료(15.12.28) 후 국무총리 재가(15.12.30)를 거쳐 '16.1.4 발령**과 동시에 시행

**참고** 총리 훈령화 이유

①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의 명령으로서 규정의 구속력을 강화

※ 훈령은 행정규칙이지만 하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규범적 성격 내포

② 금융당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금융위의 상급기관인 국무총리를 통해 규정을 제정

※ '00년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보장에 관한 규정」을 총리 훈령으로 제정한 바 있음

③ 금융당국이 행정편의에 따라 쉽게 개정하지 못하도록 당해 규정 제·개정 시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절차 강화 필요\*

\* 금융위 고시는 제·개정 절차상 관계기관 의견조회, 법제처 심사 의무 없음

< 참고 : 규정 형식 간 비교 >

구 분	금융위원회 고시	국무총리 훈령
제·개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 내부절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관계부처 협의(10일)→법제처 심사→국무총리 결재</li> </ul>
규율권자/규율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율권자 = 금융위원회</li> <li>■ 규율대상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율권자 = 국무총리</li> <li>■ (좌동)</li> </ul>
구속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내부 자체규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급기관 명령에 의한 규율</li> </ul>

## II. 총칙

### 1.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금융개혁의 핵심 개념인 “경쟁과 혁신”을 명문화

○ 금융규제 신설·강화 또는 집행 시 금융위 및 금융유관기관이 지켜야 할 가치를 “합리성·투명성·책임성”으로 설정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법성, 타당성, 효율성 등 → **합리성**
-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정책 예측가능성 등 → **투명성**
- 공정성 등 민주적·직업적 책임성 → **책임성**

※ 영국, 호주 등 외국 감독기구 미션(mission), 목표(object) 등 참고

- ① 영국 금융통합법(FSMA) 목표(object)
  - market confidence, public awareness, the protection of consumers, the reduction of financial crime
- ②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 (Mission) to establish enforce prudential standards and practices designed to ensure that under all reasonable circumstances, financial promises made by institutions we supervise are met within a stable, efficient and competitive financial system
  - (Values) integrity, collaboration, professionalism, foresight, accountability

###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 부문으로 한정한다)
  -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를 받는 자
  - 카. 그 밖에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
2. “**금융유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 가. 금융감독원
  -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 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차.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카.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등을 감독하거나 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권한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 타. 금융위원회나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 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조사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규제업무 등 금융회사등을 회원으로 하면서 그 금융회사등 간의 합의에 따라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을 정하고 집행하여 금융회사등을 규율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규제**”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융회사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는 법령에서 주어진 권한 또는 기능에 근거하여 사실상 금융회사등의 영업 또는 업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명시적 금융규제: 법령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금융규제
  - 나. 비명시적 금융규제: 법령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금융규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규제
    - 1) 금융행정지도
    - 2) 금융유관기관의 업무규정, 지침, 업무방법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금융행정지도**”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조문의 형식으로 하는 행위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가. 감독행정작용
  - 나. 금융회사등의 신청 또는 질의 등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해석이나 그 해석에 따른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는 행위
  - 다.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 금융회사등에 새로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행위
  -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의 통보
  - 마.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행위 외의 행위로서 이와 비슷한 것
5. “**감독행정작용**”이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에 법령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① “**금융회사등**” (제1호)

- **규제·집행(감독, 검사, 금융서비스 제공 등)의 상대방을 총칭**
  -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저축은행 등(국내 영업 외국회사 포함)
  - 거래소 상장사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적용 받는 회사
  - 금융권 협회 등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비영리법인
  -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도 행정집행이 아닌 영리활동 측면에서는 적용

### ② “**금융유관기관**” (제2호)

-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금융규제를 집행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기관인 금융위원회 외의 기관도 포괄하여 정의**
  - 금융공공기관 :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캠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은 해당없음)
  -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한국은행
  - 금융권 협회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 금융유관기관 개념의 필요성 >

※ '14년 금융규제개혁 과제검토 결과, 금융회사의 개선요구 과제 중 법령등 외 금융유관기관의 규정, 매뉴얼 등이 50% 이상을 차지

### ③ “**금융규제**” (제3호)

- **규제를 실질적으로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여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정의” 보다 범위 확대**  
 <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 >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금감원 소관 감독규정 시행세칙 상 규제는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이므로 명시적 규제\*로 간주**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

< 참고 : '10.7.28자 국무총리실 공문 주요내용 >

귀원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정·개정되는 모든 시행세칙에 대해 규제 심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4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제4호, 제5호)

-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모두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이지만 **절차적 통제 적용수준**을 고려하여 구분

< 감독행정 개념의 필요성 >

입법기술상 한계로 인해 모든 감독기준을 법규에 담을 수 없어 집행상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제시가 불가피한데(예: 리스크 관리, 소비자보호 준칙 등), 이러한 감독행위를 통상의 행정지도와 동일하게 의견청취, 사전협의 등 내부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경우 행정비용이 과다하기 때문

<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 >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양자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
  - (행정지도) 관계법령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감독행정) 금융회사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법령등\*을 입법 취지에 따라 준수할 수 있도록, 법령등을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

\* 예 : 소비자보호 준칙, 내부통제기준 수립 의무, 위험관리기준 등

※ 구별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간주할 것을 권고

< 사례 :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권 협회 규정 등의 제·개정에 대한 개입 >

업권 요청에 따라 또는 금융감독기관이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업계와 협의하는 것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관련 사례를 규정화하지는 않았으나, 업권 지원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관이 협회 규정 제·개정을 주도하는 행위는 가급적 지양할 것을 권고**

**참고 법령등**

1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 호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참고 :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기관수	검사대상기관
금융지주	10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SC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JB금융지주
은행부문	58	시중은행(7), 지방은행(6), 농업은행, 수협중앙회, 특수은행(3), 외국은행 국내지점(39), 전국은행연합회
중소서민금융부문	2,778	상호저축은행(79),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수·산림조합(1,359),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9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72), 여신금융협회, 대부업자(350)
보험부문	61	생명보험사(24), 외국생명보험사 국내지점(1), 손해보험사(18), 외국손해보험사 국내지점(13),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보험개발원
금융투자부문	575	증권회사(46),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11), 선물회사(7), 신용평가회사(4), 채권평가회사(4), (전업)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4), 부동산투자회사(CR REITs 등)(114), 증권사(1), 자금중개·외국환중개회사(9), 자산운용회사(87), 투자자문회사(170), (전업)일반사무관리회사(6), 선박운용회사(5), 선박투자회사(88), 부동산신탁사(11), 펀드온라인코리아,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기타부문	119	전자금융업자(71), 신용정보업자(29), 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부가통신업자(16)
합 계 <sup>주)</sup>	3,601	

주 : 유통계카드사(3), 보험대리점(34,468), 보험계리업(19), 손해사정업(944), 보험중개사(121), 역외투자자문회사(163), 투자회사(104), 사모투자전문회사(296), 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3), 경영신용정보회사(3), 회계법인(150) 등 36,274개 제외

## ②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관련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참고

## 금융감독원 감독행정 사례

### 1. 리볼빙서비스 리스크관리 및 이용회원 권익 강화(상호여전)

#### 1. 공문내용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 리볼빙서비스 약정시 회원 자격심사 철저, 회원 신용도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 차등화, 이용회원의 신용도 모니터링 강화 및 부실징후 회원에 대한 카드이용한도 관리 강화

이용회원의 권익 강화

- 고객의 서비스 이용사실에 대한 안내강화, 최초 약정시 설명의무 이행 철저 및 약정기간 설정·운영

#### 2. 근거 법규

- 여전업감독규정 제14조에서는 여전사가 위험관리에 관한 규정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운영토록 포괄적으로 규정

< 여전업감독규정 >

**제14조(위험관리규정)**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및 절차, 한도관리, 내부통제와 위험측정, 관리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자체 설정에 맞게 제정·운영하여야 함.

#### 3. 공문 필요성

- 리볼빙서비스의 경우 이용회원 및 이용잔액이 증가함에도 법규에 리스크관리 기준 및 이용회원의 권익보호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도('11.3.)

## 2. 내부통제 강화로서 위기상황 관리대책 마련 필요성을 환기

### 1. 주요 공문내용

- RBC비율 취약 등 건전성이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 위기상황 분석시 금리인상에 따른 RBC하락 가능성을 감안한 위기 상황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유념 하도록 주의환기

### 2. 근거 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는 보험회사의 경영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인식, 측정, 감시,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 운영하는데 있어 따라야할 절차와 기준 등을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5>(내부통제기준 반영사항)

2.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운영에 대한 이사회, 경영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기타직원 등의 역할과 책임 및 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보험회사의 경영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체제를 구축·운영하는데 있어 따라야할 절차와 기준

### 3. 공문 필요성

- 미국금리 인상 등으로 금리가 상승반전할 경우 채권평가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RBC비율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
  - 그러나 법규에서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위험의 인식 및 통제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반영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이는 향후 발생가능한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해당 위험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갖추도록 미리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 3. 연금저축상품관련 유의사항 통보(연금저축)

### 1. 주요 공문내용

- 개인연금의 금융기관 간 계약이전 통보서류상 당사가입일과 최초 가입 일자를 구분 표시하여 법상 의무납입기간을 산정해야 함을 안내 ('13.6.)

### 2. 근거 법규

- 舊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연금,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이 가능함을 명시

#### < 舊 조세특례제한법 >

####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⑧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 3. 공문 필요성

- 계약이전 통보서류 상에 최초 가입일자가 아닌 현 상품의 가입일자만 표기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의무납입기간(10년) 산정시 여러 차례 계약이전을 한 가입자의 납입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명시적 금융규제,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그 밖의 금융규제의 원칙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등과 상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융시장 불안 시 금융당국이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단,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외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
- 예외 요건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금융위원장의 긴급조치권이 인정되는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한정

### 참고 법령등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긴급조치)** ① 위원장은 **내외의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III.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및 절차

#### 4. (제4~6조)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의견청취 등

**제4조(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① 명시적 금융규제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②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이 하는 영업 또는 업무 등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법령등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를 제재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등의 금융규제 방식이 가능하고 적절한지 여부  
2. 금융회사등이 하는 영업 또는 업무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령등에 그 제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법령등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두 허용하는 등의 금융규제 방식이 가능하고 적절한지 여부  
3. 서로 다른 금융회사등이 하는 영업 또는 업무 등이 경제적·실질적 측면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면 그 금융회사등 간에 동일한 규제수준의 금융규제가 적용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  
4. 금융회사등의 자산·자기자본 등의 규모, 위험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는지 여부  
5. 해당 금융규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 또는 외국의 비슷한 법제도와 비교하여 그 규제수준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제5조(의견청취)** ① 금융위원회는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민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규제심사위원회)** ①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명시적 금융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5조 및 제6조와 이 훈령 제4조제1항을 지켰는지 여부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3.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결과
- ④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자체규제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지체 없이 금융규제민원포털(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제2항의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고려사항은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15.6.15)에서 제시한 **7개 합리화기준**을 반영\*

\* 사후 정비목적인 “온라인 환경에의 부합”, “금융사고 등으로 일시적 강화된 규제 합리화”는 규정에서 제외

- ① 사전적 규제는 **사후적 규제**로 개선하고 사후책임을 강화 (제4조제2항제1호)
- ②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제4조제2항제2호)
- ③ 업권별·기능별로 **규제수준을 맞추어 경쟁 촉진** (제4조제2항제3호)
- ④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 (제4조제2항제4호)
- ⑤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제4조제2항제5호)
- ⑥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를 온라인 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 (미반영, 사후정비 시 기준으로 활용)
- ⑦ **금융사고** 등으로 일시적 강화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미반영, 사후정비 시 기준으로 활용)

**참고 법령등**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5조, 제8조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 1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현황

### □ 설치목적

- 규제정책의 심의·조정, 규제 심사·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치(위원장 소속 심의의결 기구)

### □ 구성

- (위원구성) 민간위원 7인, 정부위원 2인(사무처장, 기획조정관)

\* 민관공동위원장 : 박상수 교수, 금융위 사무처장

< 금융위 자체규제심사위 위원 (총 9명) >

구분	성명	소속	위촉일*	비고
내부 (2인)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	공동위원장
	류재수	금융위 기획조정관	-	간사
외부 (7인)	박상수	경희대 교수	'12.03.13	공동위원장
	손진화	가천대 법학과 교수	'15.06.01	전자금융
	이중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비용분석실장	'15.06.01	비용분석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15.06.01	비용분석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15.10.01	보험
	심영	연세대 로스쿨교수	'15.10.01	은행
김은집	김&장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15.10.01	자본시장	

-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

### □ 주요 기능

- 금융위 규제개혁 계획수립 및 규제개혁 전반에 관한 사항
- 금융위 자체 규제심사 및 시행 계획 수립
- 유사행정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자체심사

### □ 개최실적

- 최근 5년간 연평균 14회 개최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횟수	15	18	13	12	12

## 참고 2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전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영향분석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서면을 말한다.
2. "자체심사"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규제영향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유사행정규제"라 함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융유관기관의 정관·내규 등 각종 규정중 국민·회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의 신설·강화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하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 당연직 위원과 7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1인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금융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융위원회 규제개혁 계획수립 등 규제개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금융위원회 자체 규제심사 시행계획 수립
3.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실시
4. 유사행정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자체심사
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 IV. 금융행정지도의 원칙·방식 및 절차 등

### 5. (제7조)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 감독행정작용에 적용(제16조)

- 제7조(금융행정지도의 원칙)**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하는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의 내규·업무방법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제2조제2호과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에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법령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융행정지도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의 인사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리·수수료 등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관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면 금융회사등의 건진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금융당국이 금융행정지도를 금융회사 내규, 지침 등이나 협회 자율규제 등에 반영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제3항)

○ 단, 법령에서 위탁한 협회 자율규제사항에 대한 위탁자로서의 감독은 가능

\* 예 : 보험협회의 생명(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준수규약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⑥ 보험협회는 필요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광고물을 미리 제출받아 보험회사등의 광고가 이 법이 정한 광고기준을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등

**제7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입안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서면의결)** 위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중요규제가 아니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배석 등)** 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안부서 직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심사의견서 작성 등)** 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규제명, 심사일시 및 참여자 내용, 평가요소별 심사의견,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종합심사의견, 심사참여자의 주요이견 등을 포함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청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금융행정지도·감독행정작용과 법령 위반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이상** 금융행정지도·감독행정작용 미이행을 이유로 하는 **제재조치 불가**(제4항)

③ 금융회사등의 **내부경영사항에 대한 개입금지 원칙**(제5,6,7항)

- **(원칙)** 인사, 가격, 배당 등 금융회사등의 내부경영사항에 대해 **법령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입불가**
- **(예외)** 단, 인사를 제외한 가격, 배당 등에 대해서는 ①**건전성**, ②**금융이용자보호**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내부경영사항에 대한 개입금지 원칙의 예외>

내부경영사항	예외 적용	
	법령등에 규정된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6항 각 호에 해당
인사	○	×
가격, 배당 등	○	○

- 개입금지 범위를 사전에 일률적으로 규정화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금융위원회 의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예외조항 적용의 **절차적 타당성을 보완**

### 참고 법령등

□ 「행정절차법」 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15.8.15, 발표) 中 관련 내용 발췌

-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리·수수료 등 가격변수를 자율성을 갖고 결정·운영하는 금융관행**을 확립
  - ① 금융회사가 가격변수를 결정·운영함에 있어 정부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예: 카드 수수료 등) 이외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
    -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 보호 및 서민층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
  - ② 금융회사는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 개편 목적만으로 금리·수수료를 인상하기 보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체계하에서 조정
  - ③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금리·수수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 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시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 **배당**의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관여없이 관련 법적절차**(주주총회 등)를 통해 결정하며,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바젤III등 국제기준,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결과 등을 감안하여 적정 자본 유지 필요
- 그 동안 상기 원칙에 위배되는 **그림자 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임을 대외 공표(금융회사에도 개별통보하며, 관련 질의 시 즉시 회신)

**6. (제8조) 금융행정지도의 방식 ※ 감독행정작용에 적용(제16조)**

**제8조(금융행정지도의 방식)**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금융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융행정지도인지 감독행정작용인지 여부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권리번호
  2.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 및 목적
  3. 제13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4.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성명 및 직위
  5.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
  6. 제7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원칙의 내용
  7. 제7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그 사유
-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제1항에 따라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금융감독원의 경우 그 문서의 결재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사항을 정한 업무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결재를 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문서로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금융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한 후 지체없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에 그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금융행정지도는 효력이 없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행정지도 업무의 내부위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각각 정한다.

①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식 금융행정지도·감독행정작용 시행 가능(제4항)

② 금융행정지도 등은 반드시 문서로 시행하고, 구두지도한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지체없이 문서로 시행(제2,3항)

**7. (제9조~제11조) 금융행정지도 시행 전 절차**

**제9조(의견청취)**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20일 이상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공고하고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부서는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의 경우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과 협의하여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한 경우

**제10조(사전보고)**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접수 업무의 내부위임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1.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경우 그 내용 및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반영한 결과
3.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이 법령등 또는 이미 공개된 금융정책 등의 내용에 상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4. 제13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5.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제11조(금융감독원의 내부보고절차)** ①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부원장보 바로 아래 직급의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감독원이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기 전이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 단서에 따라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사유
  2.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
  3. 제10조 각 호의 사항
  4. 제10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그 의견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부원장 중 최상위 직급의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부원장보 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한 이후에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한 이후 지체 없이 보고
2. 금융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한 경우: 매 반기별로 일괄하여 보고

□ **금감원은 금융행정지도 시행 전 금융위 관련 부서에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사전 보고(제10조)**

○ **금융위도 금융행정지도 시행 시 금감원 관련 부서와 반드시 사전협의해야함(금융위 내부지침)**

□ **금감원 소관 부서장은 금융행정지도 시행 시, 자체 심의기구인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사전보고**

\*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위원 : 부원장 9명)으로 하며, 금감원 행정지도, 감독행정을 총괄 심의하는 기구

○ 제11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은 법무실과의 협의를 통해 사후보고 가능

**참고**

**금감원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개요**

□ **(구성) 금감원 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금감원 수석부원장

○ 위원 : 금감원 부원장보 9명(안건에 따라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및 금융업계 관계자를 위원으로 추가 지명 가능)

\* 간사 : 금감원 법무실 국장

□ **(기능) 금감원이 시행하는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등 통할**

①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시행시 적정성 사전 심의**

<b>행정지도</b>	(원칙) 모든 행정지도에 대해 심의
<b>감독행정</b>	(원칙) 각 부서 책임 하에 공문 시행 ⇒ 별도 심의절차 불요 (예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심의

② **금융행정지도 등 운영현황 점검**

③ **시행세척(표준약관 포함)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운영) 안전작성 부서장이 발표하고, 참석 위원들 토론 후 의결**

○ 금융행정지도 심의 안건은 **의견수렴절차 종료 후 부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행정지도 관련 금융업계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 청취**

**8. (제12조) 금융행정지도 등록 등 ※ 감독행정작용에 적용(제16조)**

**제12조(등록 및 공개)**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행정지도 또는 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그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의 부여 업무는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의 경우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이 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 금융행정지도를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금융행정지도 및 감독행정작용에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모두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등록
- 공개·비공개 여부**는 금융위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라 판단

**참고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비공개대상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1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등록 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공직자 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li> <li>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정보</li> <li>3.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과 관련된 정보</li> <li>4. 공판 개정 전의 소송 관련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li> <li>5.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정보 (통계법 제13조)</li> <li>6. 업무상 수집된 개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정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4조)</li> <li>7.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민원 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li> <li>8.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2호)</li> <li>9. 감사 관련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정보(행정감사규정 제28조)</li> <li>10. 징계위원회 회의 정보(공무원징계령 제20조)</li> <li>11. 공무원 근무평정 정보(공무원평정규칙 제9조)</li> <li>12.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li> </ol>
법 제9조제1항 제2호	<p>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정책 관련 각종 국제회의의 협상대응 준비 및 전략 관련 정보</li> <li>2. 을지 연습, 직장에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정보</li> <li>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체 IP세부할당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li> <li>4. 국제금융기구 등이 정부 또는 공적기관과 협약에 의해 국내 금융시장 등에 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비공개조건으로 생산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li> </ol>

<b>법 제9조제1항 제3호</b>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2. 금융 법규 위반 관련 조사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b>법 제9조제1항 제4호</b>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b>법 제9조제1항 제5호</b>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회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회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회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불시감사·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조사 또는 진행 중인 불공정거래 및 시장 감시와 관련되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정보 가. 채용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나.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심사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다.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라.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회·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회에 있는 정보 가. (규제관련)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대한 정보(대판 2003.8.22, 2002두 12946) 다.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라.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마. 정책수립 과정 중에 수행한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결과	
6.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7.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8. 기타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중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b>법 제9조제1항 제6호</b>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금융 관련 법규 위반자의 개인 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 2.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와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사정, 감사, 민원등에 관하여 알게 된 개인 사항과 성희롱 예방 및 상담 등과 관련한 개인 정보 4.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	

**9. (제13조) 유효기간**

**제13조(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거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융행정지도: 90일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한 금융행정지도: 6개월
3. 정부가 명시적 금융규제를 도입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관련 법률이 제정·개정되지 아니하여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금융행정지도: 2년
4. 그 밖의 금융행정지도: 1년

③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하기로 한 금융행정지도는 1회에 한하여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 그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1회 이상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다음 새로 이와 같거나 비슷한 금융행정지도를 하더라도 그 새로운 금융행정지도는 효력이 없다.

□ 금융행정지도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성격에 따라 유효기간을 차등화(제2항)

- 구두지도는 90일 이내로 제한
- 법령 또는 규정의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2년\* 이내로 설정 가능

\* 당초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9.18) 발표 시 3년까지 설정이 가능했으나, 공청회(11.26) 업계 의견(법령을 규정해야 할 중요한 규제는 조속히 법제화되도록 유효기간을 축소시키는 게 필요)을 일부 반영, 2년으로 축소

<p>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6.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p> <p>7.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p>	
<p><b>법 제9조제1항 제7호</b></p>	<p>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1. 인허가 신청 등 법령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p> <p>2. 업무상 취득한 금융기관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p> <p>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p> <p>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b>법 제9조제1항 제8호</b></p>	<p>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1.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p> <p>2. 금융 법규 위반 관련 조사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p>	

□ 법제화가 필요한 금융행정지도가 행정편의에 의해 행정지도로 계속 존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장횟수를 1회 제한**(제3항)

○ 그러나 법률 제정 건은 국회 심의기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장횟수 제한을 두지 않음**

□ 제13조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횟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전 폐지하고, 유사한 금융행정지도를 신설하는 경우 → **해당 지도는 효력이 없음**(제4항)

## 10. (제14조) 사후관리 및 시정명령

**제14조(사후관리 및 시정명령)** ① 금융감독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현황(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행정지도 업무의 내부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금융행정지도가 이 훈령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은 **매년 1분기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금융위원회 사후 보고**

○ 금융위원회는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이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명령**하여 통제

□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보고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 참고 법령등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보호 또는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V. 감독행정작용의 원칙·방식 및 절차 등

### 11. (제15~16조) 감독행정작용

**제15조(사전통보)** 금융감독원은 새로 감독행정작용을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감독행정작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접수 업무의 내부위임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준용규정 등)**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행정작용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금융감독원(감독행정작용 업무의 내부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감독행정작용에 관한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금융위·금감원은 감독행정작용 시행 이전 관련 금융위·금감원 관련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함
- 감독행정작용은 “금융행정지도의 원칙”(제7조), “금융행정지도 방식”(제8조, 유효기간 적용 제외), “등록 및 공개”(제12조), “사후관리 및 시정명령”(제14조)을 준용

## VI.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 등의 마련

### 12. (제17조)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제17조(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점검 등)** ①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정비 대상 금융규제를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금융규제의 정비 여부 등의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매년 기존규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공개(제1항)
- 금융위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공개된 규제정비 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제2항)

### 참고 법령등

-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제1항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3. (제18조) 옴부즈만

**제18조(옴부즈만)**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하는 감독행정작용이나 금융행정지도, 그 밖의 금융규제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이나 업무처리 등을 발굴하고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등의 고충민원의 처리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에 대한 개선 권고나 관련 금융규제의 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
3. 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건의 또는 의견표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이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감시 및 평가
- ③ 금융회사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이 있으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유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고 접수기관”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접수기관은 신고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직접 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옴부즈만에 전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가지는 신고 접수기관과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금융회사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신고인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신고인에게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이미 한 신고를 철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고인에게 제3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금융현장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금융현장지원단(이하 “금융현장지원단”이라 한다)은 매년 옴부즈만의 활동결과를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옴부즈만은 비공식 금융행정지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불편 해소 등의 기능 수행(제2항)
  - 옴부즈만은 금융위,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기타 금융유관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도 관여
  - 단순 민원, 정책제언 등 기존 창구(국민신문고, 비조치의견서 등) 활용이 가능한 사항은 옴부즈만 직무범위에서 제외
- 제3항의 신고접수와 관련하여 금융위, 금감원 외에도 신고인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금융권 협회에도 신고접수 센터를 마련
- 옴부즈만의 신고인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규정(제4항)
- 금융감독기관은 금융회사등의 옴부즈만 신고에 대한 방해 및 불이익조치 금지(제5항)
- 옴부즈만은 연간 활동결과를 매년 1분기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외 공개(제7항)

**참고** 금융위 ombudsman 개요

- (도입방향)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ombudsman 독립성 확보
- (ombudsman 위촉) 민간 전문가를 위촉(임기 2년, 연임 1회 가능)하고, 업권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5인 이내로 위촉
  - \* 은행·보험·중소·자본시장 등 업권별로 전문성을 갖춘 ombudsman 임명
- (직무범위) 비공식 금융행정지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불편 해소 등
  - 단순 민원, 정책제언 등 기존 창구(국민신문고, 비조치의견서 등) 활용이 가능한 사항은 ombudsman 직무범위에서 제외
- (절차)
  - ① 금융위 현장점검지원단\* 또는 협회 신고센터에서 신고 접수
    - \*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신고창구 개설
  - ② ombudsman이 신고내용 검토 및 개선권고
  - ③ 금융위·금감원은 각각 ombudsman에 조치계획을 회신
  - ④ 매년 ombudsman 활동 결과보고서는 금융위 보고 → 외부 배포
- (효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mbudsman 개선권고 의무 이행

**14. (제19조) 금융현장지원조직**

**제19조(금융현장점검반)**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하여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현장점검반(이하 이 조에서 “금융현장점검반”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기획조정관 또는 금융현장지원단에 금융현장점검반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현장점검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 애로사항의 접수·처리 업무
2. 제1호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업무

- 금융위·금감원 현장점검반의 업무범위 및 권한 등을 규정

**15. (제20조) 실태평가**

**제20조(실태평가)** ①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외부기관에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이 훈령을 지키는지 여부 및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의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평가 결과는 지체 없이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는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외부기관을 통해 규정 준수 실태를 평가
  - 평가결과는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대외 공개

## 16. (제21조) 교육

- 제21조(교육)**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이 훈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임용된 공무원 또는 새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 매년 1회 이상 규정내용에 대한 **내부교육**을 의무화

## 17. (제22조) 상벌

- 제22조(상벌)**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 훈령을 잘 지켜서 금융규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이바지한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경우 인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금융당국은 옴부즈만, 규정 준수 실태 평가 등을 통해 임직원에게 포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 제고**

## 18. (제23조)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준용

- 제23조(금융유관기관에 대한 준용)** 금융위원회는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금융규제를 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유관기관에게 명시적 또는 비명시적 금융규제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7조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금융당국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금융공공기관, 자율규제기관 등에 당해 규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음을 규정화

- ※ '14년 금융규제개혁 과정에서 숨은규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공공기관, 업권별 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숨은규제 목록 공시 등을 권고한 바 있음



금융규제 운영규정 교육자료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전문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1. 제정이유

그간 정부는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 책임문화를 정착하도록 하며 금융의 실물 분야에 대한 지원 기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규제의 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나, 경제위기·금융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금융규제의 개선 노력이 주춤한 시기에는 그 개선 이전의 규제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고, 금융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금융규제를 받는 금융회사 등의 관점보다는 금융규제의 운영주체의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 온 측면이 있었으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금융회사 등의 경영건전성 유지 등을 명분으로 비공식적으로 행정지도, 구두 지시 등을 하는 관행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도 이러한 행정지도나 금융규제 등에 안주하면서 자율적 책임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바, 앞으로는 금융규제의 정의 및 유형 등을 명확하게 하고, 명시적 금융규제, 금융행정지도 및 감독행정작용의 원칙·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하며,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 등을 마련하는 등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에 관한 내부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정부의 금융규제 개혁을 체계화·상시화하고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금융규제의 정의 및 유형(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유관기관이 은행·금융투자업자·보험회사,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금융회사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금융규제를 정의하고, 명시적 금융규제 뿐만 아니라 법령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금융행정지도나 금융유관기관의 업무규정·지침 등 비명시적 금융규제도 금융규제의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일반 행정규제에 비하여 금융규제의 운영주체를 직·간접적으로 금융행정을 하는 기관 전반으로 확대함.

### 나. 이 훈령의 적용범위(안 제3조 신설)

금융규제의 원칙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 등에 상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되,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로 금융위원회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다.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및 절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신설)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금융규제로서 명시적 금융규제는 그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되도록 하고, 사전규제폐지·사후통제강화 방식,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동일기능 동일규율 체계의 도입 가능성, 금융회사

등의 규모·위험관리체계 등에 따른 규제수준의 차등화 여부, 국제적 기준 또는 외국의 법제도와 비교한 규제수준 등의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금융규제를 신설·강화하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하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가 명시적 금융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원칙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검토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인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 금융규제에 관한 절차를 정함.

**라.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안 제2조제4호, 제7조 및 제8조 신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 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금융행정지도를 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의 내규·업무방법서 등이나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율규제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의 정관 등에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법령 등에 따라 관련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융행정지도의 방법으로 금융회사 등의 인사·배당, 금리 등 금융상품의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금융행정지도의 원칙을 정하고,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 금융행정지

도의 관리번호·내용·목적·유효기간 및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성명·직위 등을 금융회사 등에 밝히고 정당한 결재권자가 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는 등 금융행정지도의 방식을 구체화함.

**마. 금융행정지도 절차의 구체화(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신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20일 이상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통하여 공고하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 의견을 청취한 내용 및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반영한 결과와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국장급 직원에게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원장보 전원을 위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야 새로 금융행정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행정지도를 남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금융규제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행정지도의 등록,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하기 전에 미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통하여 등록하여 원칙적으로 공

개되도록 하고,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등의 경우에 구두(口頭)로 하는 금융행정지도는 90일, 긴급성이 인정되어 심의위원회에 사후 보고된 금융감독원의 금융행정지도는 6개월, 그 밖의 금융행정지도는 1년 등으로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각각 설정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보고받은 금융행정지도가 이 훈령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감독행정작용의 원칙, 방식 및 절차 등(안 제2조제5호, 제15조 및 제16조 신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금융회사등에 법령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행위로서 금융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감독행정작용할 때에도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과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새로 감독행정작용을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감독행정작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을 통하여 금융행정지도와 구분되는 감독행정작용의 경우에도 금융회사 등에게 금융규제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아.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 등의 마련(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신설)**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게 금융규제 민원포털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금융규제의 정비 여부 등의 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 등에 하는 감독행정작용이나 금융행정지도 등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이나 업무처리 등을 발굴하고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옴부즈만을 두도록 하며, 금융회사 등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하여 금융현장의 금융규제의 집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금융현장점검반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훈령이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실태평가, 교육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 등에 명시적·비명시적 금융규제를 할 때에도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및 절차,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정비 대상 금융규제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으로 하여금 금융규제를 상시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금융규제 운영규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 부문으로 한정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를 받는 자  
카. 그 밖에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

2. “금융유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 가. 금융감독원
-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 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차.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카.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등을 감독하거나 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권한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타. 금융위원회나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 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조사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규제업무 등 금융회사등을 회원으로 하면서 그 금융회사등 간의 합의에 따라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을 정하고 집행하여 금융회사등을 규율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규제”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융회사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는 법령에서 주어진 권한 또는 기능에 근거하여 사실상 금융회사등의 영업 또는 업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명시적 금융규제: 법령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금융규제

나. 비명시적 금융규제: 법령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금융규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규제

1) 금융행정지도

2) 금융유관기관의 업무규정, 지침, 업무방법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금융행정지도”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조문의 형식으로 하는 행위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감독행정작용

나. 금융회사등의 신청 또는 질의 등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해석이나 그 해석에 따른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는 행위다.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 금융회사등에 새로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의 통보

마.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행위 외의 행위로서 이와 비슷한 것

5. “감독행정작용”이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에 법령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명시적 금융규제,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그 밖의 금융규제의 원칙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등과 상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장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및 절차

**제4조(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① 명시적 금융규제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②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이 하는 영업 또는 업무 등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를 제재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등의 금융규제 방식이 가능하고 적절한지 여부
2. 금융회사등이 하는 영업 또는 업무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령등에 그 제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법령등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두 허용하는 등의 금융규제 방식이 가능하고 적절한지 여부
3. 서로 다른 금융회사등이 하는 영업 또는 업무 등이 경제적·실질적 측면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면 그 금융회사등 간에 동일한 규제수준의 금융규제가 적용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

4. 금융회사등의 자산·자기자본 등의 규모, 위험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는지 여부

5. 해당 금융규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 또는 외국의 비슷한 법제도와 비교하여 그 규제수준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제5조(의견청취)** ① 금융위원회는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민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규제심사위원회)** ①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명시적 금융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5조 및 제6조와 이 훈령 제4조제1항을 지켰는지 여부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3.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결과

④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자체규제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지체 없이 금융규제민원포털(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3장 금융행정지도의 원칙·방식 및 절차 등

**제7조(금융행정지도의 원칙)**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하는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의 내규·업무방법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제2조제2호과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에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법령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융행정지도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의 인사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리·수수료 등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관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면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금융행정지도의 방식)**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금융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융행정지도인지 감독행정작용인지 여부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리번호

2.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 및 목적
3. 제13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4.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성명 및 직위
5.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
6. 제7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원칙의 내용
7. 제7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행정 지도를 하는 경우 그 사유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제1항에 따라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금융감독원의 경우 그 문서의 결재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사항을 정한 업무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결재를 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문서로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금융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한 후 지체 없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에 그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금융행정지도는 효력이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행정지도 업무의 내부위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각각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20일 이상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공고하고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부서는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의 경우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과 협의하여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한 경우

**제10조(사전보고)**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접수 업무의 내부위임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1.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경우 그 내용 및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반영한 결과
3.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이 법령등 또는 이미 공개된 금융정책 등의 내용에 상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4. 제13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5.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제11조(금융감독원의 내부보고절차)** ①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부원장보 바로 아래 직급의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감독원이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기 전이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 단서에 따라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사유
2.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
3. 제10조 각 호의 사항
4. 제10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그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부원장 중 최상위 직급의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부원장보 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

간의 연장을 한 이후에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한 이후 지체 없이 보고
2. 금융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한 경우: 매 반기별로 일괄하여 보고

**제12조(등록 및 공개)**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행정지도 또는 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그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의 부여 업무는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의 경우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이 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 금융행정지도를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거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융행정지도: 90일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한 금융행정지도: 6개월
  3. 정부가 명시적 금융규제를 도입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관련 법률이 제정·개정되지 아니하여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금융행정지도: 2년
  4. 그 밖의 금융행정지도: 1년
- ③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하기로 한 금융행정지도는 1회에 한하여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 그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1회 이상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다음 새로 이와 같거나 비슷한 금융행정지도를 하더라도 그 새로운 금융행정지도는 효력이 없다.

**제14조(사후관리 및 시정명령)** ① 금융감독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현황(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행정지도 업무의 내부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금융행정지도가 이 훈령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4장 감독행정작용의 원칙·방식 및 절차 등

**제15조(사전통보)** 금융감독원은 새로 감독행정작용을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감독행정작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접수 업무의 내부위임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준용규정 등)**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행정작용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금융감독원(감독행정작용 업무의 내부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감독행정작용에 관한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5장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 등의 마련

**제17조(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점검 등)** ①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비 대상 금융규제를 금융규제민원 포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금융규제의 정비 여부 등의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옴부즈만)**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하는 감독행정작용이나 금융행정지도, 그 밖의 금융규제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이나 업무처리 등을 발굴하고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등의 고충민원의 처리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에 대한 개선 권고나 관련 금융규제의 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
3. 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건의 또는 의견표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이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감시 및 평가

③ 금융회사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이 있으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유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고 접수기관”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접수기관은 신고 사실 및 그 밖

의 관련 정보 등을 직접 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옴부즈만에 전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가지는 신고 접수기관과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금융회사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신고인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신고인에게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이미 한 신고를 철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고인에게 제3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금융현장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금융현장지원단(이하 “금융현장지원단”이라 한다)은 매년 옴부즈만의 활동 결과를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금융현장점검반)**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하여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

기 위하여 금융현장점검반(이하 이 조에서 “금융현장점검반”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기획조정관 또는 금융현장지원단에게 금융현장점검반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현장점검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 애로사항의 접수·처리 업무
2. 제1호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업무

**제20조(실태평가)** ①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외부 기관에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이 훈령을 지키는지 여부 및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의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평가 결과는 지체 없이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이 훈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임용된 공무원 또는 새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상벌)**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 훈령을 잘 지켜서 금융규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이바지한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경우 인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금융유관기관에 대한 준용)** 금융위원회는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금융규제를 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유관기관에게 명시적 또는 비명시적 금융규제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7조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행정지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신설·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된 금융행정지도는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